

돌봄서비스 훈련 훈련비 환급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: 10일	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-	
	주소			휴대전화	
훈련과정	훈련기관명	훈련과정명	훈련기간	훈련참여결과	본인부담 훈련비
수강현황			~	☐ 수료 ☐ 조기취업	원
신청금액		원			
취(창)업자	취업 (해당자)	사업장명	전화번호	재직기간	담당업무
				~	
				~	
	창업 (해당자)	사업장명	사업자등록번호		
		개업일	업종		
재직자	재직현황 (해당자)	사업장명	전화번호		
		재직기간	. . . ~ . . .		담당업무
입금계좌	은행명	계좌번호	예금주명		

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4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부담 훈련비 환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(지)청장 귀하

신청인	1. (취업자 또는 재직자인 경우)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	수수료
제출서류	2. (창업자인 경우)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 관련 증빙서류	없음

유의사항

- 훈련과정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(해당 훈련과정 시작일 이전부터 훈련종료일까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근무 중인 재직자인 경우에는 1년) 이내에 취(창)업한 사람이 본인부담 훈련비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 - 돌봄서비스 분야 중 어느 하나의 직종에 취업할 것
 - 다음 각 호의 취업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
 -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(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)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
 -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. (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)
 -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 이상(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)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(단 이 경우 본인부담 훈련비의 50%를 환급받을 수 있음)
 -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
 -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
- 훈련과정 수강 시 돌봄분야 재직상태였던 사람이 본인부담 훈련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 -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의 어느 하나의 직종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
 -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
 -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
- 돌봄서비스 분야(KECO 기준): 2322.보육 관련 시설 돌봄 종사원, 2329.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, 30.보건의료직, 55.돌봄서비스직(간병·육아)

※ 아래 란은 고용센터 담당자 업무를 위한 사항으로 적지 않습니다.

처리	[] 지급	지급금액	원		
	[] 부지급	부지급사유			
결재	담당	팀장	소(과)장	결재 연월일	

처리절차

